

# 한 미 회 계 법 인

## HANMI ACCOUNTING CORPORATION

우편번호 0615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3(삼성동, 창조빌딩)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귀중

2019년 4월 17일

#### 감사의견

우리는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2월 28일과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운영차익처분계산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2019년 2월 28일과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 및 운영차익의 변동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기타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산학협력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3(삼성동, 창조빌딩)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신기현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9년 4월 1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